

제 호
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
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신청한 야간 옥외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서 유지를 위 한 조건을 붙여서 허용함을 통보합니다. <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> 1. 2.
귀하가 개최한 집회가 위의 조건을 위반하여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에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 3호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게 됩니다. 년 월 일 경찰서장(시·도경찰청장) [인] 귀하

21026-26411일

190mm×268mm

(신문용지 54g/m²)

제 호
수령증
년 월 일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.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(인)